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2011 - 51 - 175호 (사건번호 : 201106조사020)

안 건 명 (주)KT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석채

의결연월일 2011. 9. 19.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ii)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제출하고, (iv)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검증하고, 허위 입력시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v)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비·할부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및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3,660,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단말기 보조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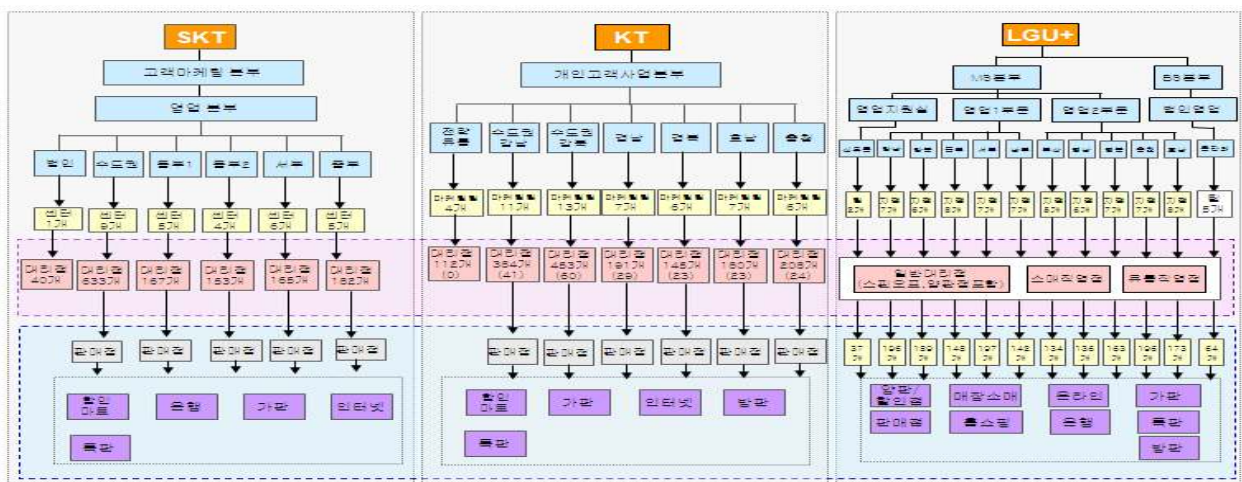
< ① 단말기 유통구조 >

이통 3사 모두 수도권/경북/경남/호남/충청 단위로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본부 산하 마케팅팀이 대리점(직영점 포함, 이하 같음)을 직접 관리하며,

대리점 또는 대리점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개통과 동시에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통 3사 유통망 현황 비교 >

구분	SKT	KT(이하 “피싱인”)	LGU+
본부	6본부 : 영업본부, 수도권, 부산, 대구, 서부(광주), 중부(대전), 기업사업본부/SMB사업본부 (법인)	7마케팅단 : 수도권강남/강북, 경남, 경북, 호남, 충청, 전략유통	4부문 19영업담당: 영업지원실-신유통 1부문-강남, 강북, 동부, 서부, 남부 2부문-부산, 경남, 경북, 충청, 호남 법인-융합 외 8개
지점	○○개	○○개	○○개
대리점	○○○○개	○○○○개	○○○○개
판매점	약 ○○○○○개	약 ○○○○○개	약 ○○○○○개



주: 소매·대리점적점판매 도매·대리점 판매를 제외한 모든 판매(판매점, 가판, 인터넷판매 등)
자료: 사업자 제출자료(2006년 7월 말 기준)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11.8월 기준)

SKT는 계열관계에 있는 SK네트웍스(이하 “SKN”)를 통해, 피심인과 LGU+의 경우 제조사와 직접 모델사양·출고가·출고량 등을 협의하여 단말기를 유통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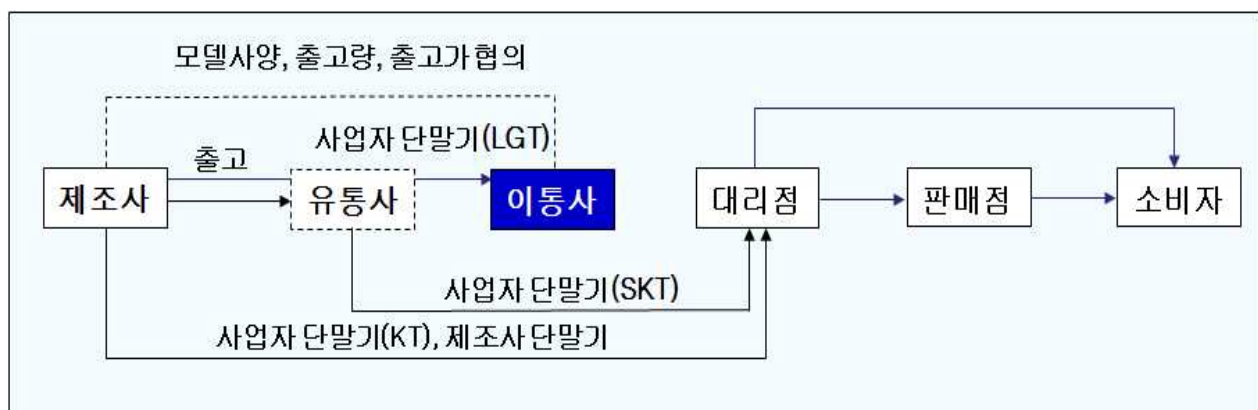
SKT의 경우, SKN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SKT의 지역본부~대리점에서 제조사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통사 본사(또는 SKN)가 제조사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단말기를 “사업자 단말기”, 지역본부~대리점에서 제조사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단말기를 “제조사 단말기”라고 하는데, SKT의 경우 현재 유통 중인 단말기 중 제조사 단말기가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피심인의 경우, 제조사와의 협의를 거쳐 단말기를 구매하여 대리점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사와 대리점간의 별도 협의를 통해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도 있다.

LGU+의 경우, 제조사와 협의 후 단말기를 본사에서 직접 공급받아 재차 대리점에 공급하고, LGU+의 본부~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수 없다.

〈 이통 3사 단말기 유통구조 비교 〉



〈 이통 3사 이용약관상 약정 보조금 관련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보조금 지급	○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사업자간 개별계약에 따름 ○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음
약정 기간	○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 설정
위약금 납부	○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 할 경우 위약금 납부 ※ 위약금=약정금액×{(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 KT의 약정 보조금 종류 〉

- ① 쇼킹스폰서 기본형 : KT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약정기간에 따라 가입시 단말기 가격을 일괄 할인해 주는 제도
- ② 쇼킹스폰서 골드형 : KT 가입자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 가입자 중 월 사용요금이 많은 고객이 할부로 개통할 경우 할부유지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

약정外 보조금은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수수료 등을 轉用하여 지급되고, 이들 財源은 영업보고서상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제외)” 및 “가입자관리비용”으로 분류된다.

※ 약정外 보조금의 세부 지급유형으로는 단말기 판매시 즉석에서 저가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할인판매”, 가입비·채권 보전료·충전기 비용 등을 면제해 주는 “가입비 면제”, 출고가로 판매하되 그 차액을 가입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환불(Payback)” 등이 있고, 할인판매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 ③ 약정外 보조금의 財源 〉

약정外 보조금의 財源은 ① 판매 장려금(이통사→대리점), ② 약정 수수료(이통사→대리점) 및 ③ 제조사 장려금(제조사→대리점)으로 구성된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영업 정책에서 정한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rebate)로서,

※ 영업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매월 수회~수십회 배포되고, 본사→지역본부→대리점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별 정책이 가미될 수 있음

재고물량 소진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특정 단말기(비인기 단말기 또는 인기·최신 단말기)를 전략 단말기로 설정, 더 많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전략 단말기 정책”이 대표적이다.

〈 전략 단말기 정책 예시 〉

6월 마케팅정책 (전략유통단)

對外秘

4-1. SPOT성_피쳐폰 정책										
적용 기간	가입 유형			약정/할부 기간			운영 대상			비고
	기본형 결합형	골드/ i형	스마트 스폰서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010 신규	MNP 신규	전환 신규	
6.4~	●	●	●	●	●	●	●	●		
채널	대상 모델									건당지급액
특수/대형유통	SHW-A110K, IM-U560K									40,000
	SHW-A130K, A220K, SPH-W5000, W5300, W5310, W9000, EV-W470, W550									50,000
	SHW-A200K, A250K, SPH-W8300, LG-KH3900, KU4000, IM-U530K, U570K, U660K, S610K									60,000
	SHW-A280K, SPH-W7700, W9300, W9600, W8200, W9500, EV-W700, LG-KH8600, KU9300, EV-F500, F600									80,000
	LG-KU3800									90,000
SHW-A170K									120,000	
- KU3800 : 60K -> 90K										
4-4. SPOT성_스마트폰 활성화 정책(3)										
적용 기간	가입 유형			약정/할부 기간			운영 대상			비고
	기본형 결합형	골드형 i형	스마트 스폰서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010 신규	MNP 신규	전환 신규	
6.4~	●			●	●	●	●	●	●	
채널	대상 모델									기본형
네트웍/ 특수/대형유통	NEXUS-ONE, GGL-NX1, EV-S110, LG-KU3700, KU9500, IM-A630K, KM-S120									190,000
	SHW-M290K									180,000
	IM-A750K, HTC-A6363, LG-KH5200, LG-KU2100, EV-S100, X6, N5800									160,000
- M290K : 160K -> 180K - X6, N5800 : 140K -> 160K										



약정 수수료는 이동사가 “서비스” 가입실적 또는 위탁 업무의 처리 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서비스 개통시 지급되는 “개통 수수료”나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 모집시 해당 가입자의 월 요금 수납액의 4~11%를 48개월간 지급받게 되는 “가입고객관리수수료”가 대표적이다.

〈 약정 수수료 종류 〉

구분	개통 수수료	가입고객관리수수료	단말기 기본 수수료	기타 수수료(예시)
조건·금액	건당 20,000원	월 요금 수납액의 약 4~11% (48~60개월 지급)	월 요금 수납액의 약 5% (9~48개월 지급)	요금수납 수수료 : 수납액의 1.2% 자동이체 수수료 : 2,000원

제조사 장려금은 제조사가 대리점에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리베이트로서,

협약의 주체에 따라 “기본정책”(제조사 본사-이통사 본사)·“계약대리점 정책”(제조사-특정 대리점)으로, 제공 방식에 따라 종량제·정액제로 구분된다.

※ (종량제) 0~10건 : 건당 2만원 / 11~100건 : 건당 3만원, (정액제) 100건 이상 500만원

대리점은 이러한 財源 및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을 결정, 이에 따른 적정 판매가를 “단가표” 형식으로 판매점에 배포하고, 판매점은 고객과 흥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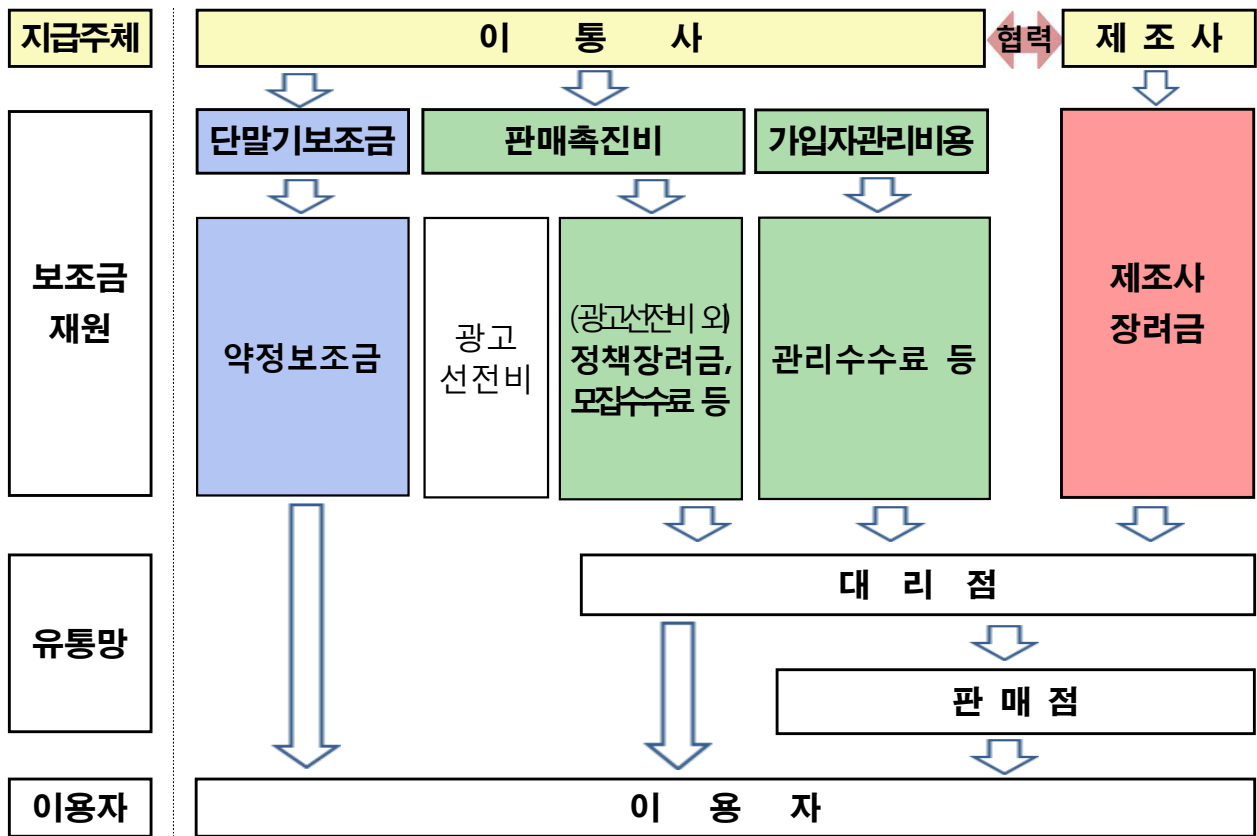
〈 대리점 단가표(예시) 〉

KT 의무약정		★010 연제/ ★MNP 연제		의무약정 신규(24개월기준)		전환신규 현금	보조금 (24개월)
제조사	모델명	닉네임	출고가	010신규	MNP		
삼성	SHW-A130K ★★	와이파이폰(FMC)	455,400	0	0	0	
삼성	SHW-A250K ★★	미니멀폴터치	330,000	0	0	0	
삼성	SHW-A220K ★★	노리폰(FMC)	399,300	0	0	0	
삼성	SHW-A200K	노리F	599,500	180,000	180,000	120,000	
삼성	SHW-A170K ★★	코비N(FMC)	594,000	0	0	200,000	
팬택	IM-A630K	이자르콘	605,000	0	0	0	
팬택	IM-U660K ★★	골드루키(FMC)	539,000	0	0	0	
팬택	IM-S610K ★★	체크메이드	473,000	0	0	0	
팬택	IM-A710K	베가X	885,500	520,000	520,000	484,000	

■ 약정 공지사항

- FMC모델의 경우 Voip 필수유치(FMC모델 : 모델 닉네임 옆 표시함) → 130K,170K,220K,KH3900,KU3800,660K
- 1년약정의 경우 약정보조금(위약금) = 5만원
- 1년약정 공짜 + 가입비면제 모델: KH3900, KU4000, KU3800,A130K, 660K, 610K - 6모델 (2년약정으로도 개통 가능)
- 이자르콘, 울티머스원,레전드폰, 베가X, 테이크 할부(스마트폰서) 개통 시 W9000 무약정 지급(스마트폰서 요금제무관 / V
- KU3700(울티머스 원), A630K(이자르) : 신규 현금가 0원! / 기본 현금가는 3만원! / 데이터 필수유치 아님!

〈 단말기 보조금 財源 및 보조금 창출경로 〉



※ KT 및 LGU+의 제조사 장려금 중 일부(출고가 대비 납품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통사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는 영업보고서상 판매촉진비에 포함됨

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 ①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 관련 조항 >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 관련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예시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가 가능하다.

'10.9.24일 방통위는 KT 등 이통 3사가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³⁾하고,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다.

다. '11년 상반기 이동전화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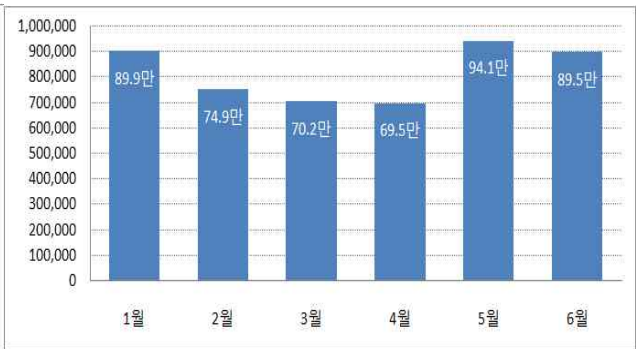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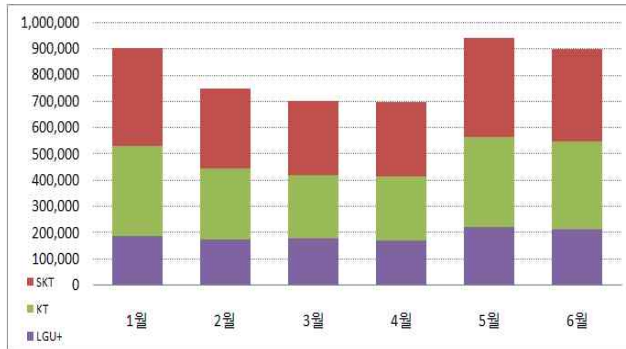
< ①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이동전화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는, 1월 89.9만건에서 4월 69.5만건까지 지속 하락하였으나 5월 들어 94.1만건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월별) >

(단위 : 건)

	SKT	KT	LGU+	합계
1월	368,996	340,519	190,058	899,573
2월	305,794	267,520	175,884	749,198
3월	282,621	239,099	180,576	702,296
4월	281,453	242,186	171,809	695,448
5월	378,429	339,363	223,442	941,234
6월	348,006	332,283	215,134	895,423



특히, 4월4주(24~30일) 17.8만건에서 5월1주(1~7일) 22.5만건으로 21% 상승하는 등 4월4주를 기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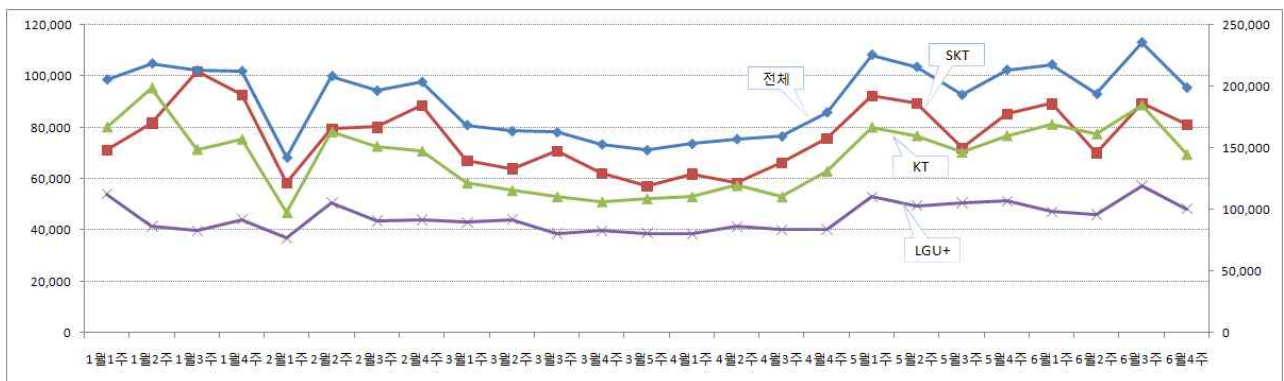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주별) 〉

(단위 : 건)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3월 1주
SKT	71,334	81,781	101,818	92,748	58,610	79,583	80,205	88,715	67,135
K T	80,258	95,394	71,557	75,532	46,965	78,289	72,758	70,882	58,471
LGU+	54,073	41,457	39,609	44,150	36,800	50,573	43,558	43,964	43,092
합계	205,665	218,632	212,984	212,430	142,375	208,445	196,521	203,561	168,698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5월 1주
SKT	64,004	70,958	62,249	57,314	61,969	58,359	66,367	75,715	92,504
K T	55,545	53,169	51,215	52,392	53,171	57,559	53,096	63,071	80,174
LGU+	44,108	38,661	39,592	38,684	38,349	41,379	40,071	40,207	52,981
합계	163,657	162,788	153,056	148,390	153,489	157,297	159,534	178,993	225,659

	5월 2주	5월 3주	5월 4주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평균
SKT	89,421	72,122	85,279	89,286	70,249	89,519	81,173	75,553
K T	76,859	70,433	76,867	81,279	77,553	88,810	69,531	67,500
LGU+	49,543	50,673	51,322	47,204	46,069	57,392	48,290	44,179
합계	215,823	193,228	213,468	217,769	193,871	235,721	198,994	187,232



이는 4.29일 출시된 갤럭시 S2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갤럭시 S2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4.29~5.25일) 〉

(단위 : 건)

구분	갤럭시S2 판매량	전체 단말기 판매량	스마트 폰 판매량	전체 단말기 중 스마트폰 비중	전체 단말기 중 갤럭시S2 비중	스마트폰 중 갤럭시S2 비중
SKT	○○○,○○○	1,268,854	○○○,○○○	○○.○%	○○.○%	○○.○%
K T	○○○,○○○	719,270	○○○,○○○	○○.○%	○○.○%	○○.○%
LGU+	○○○,○○	311,492	○○○,○○○	○○.○%	○○.○%	○○.○%
합계	609,637	2,299,616	1,606,275	69.8%	26.5%	38.0%

한편,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순증은 KT가 3.3만건으로 순증을 기록한 반면, SKT는 -3.1만건, LGU+는 -0.2만건으로 순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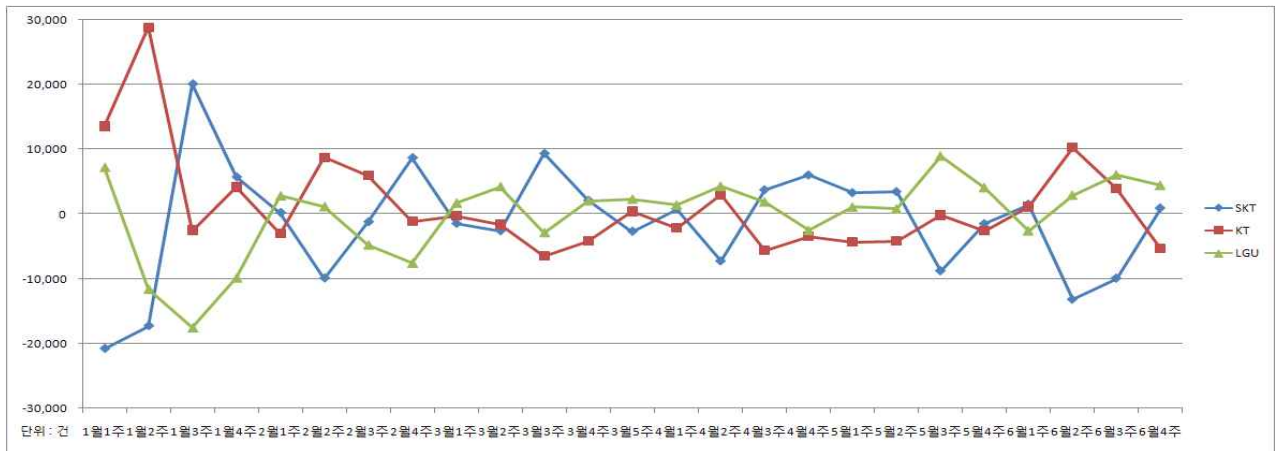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순증 추이(주별) 〉

(단위 : 건)

주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SKT	-20,795	-17,270	20,067	5,701	198	-9,914	-1,216	8,669	-1,479
K T	13,604	28,855	-2,497	4,168	-3,001	8,752	5,982	-1,084	-213
LGU+	7,191	-11,585	-17,570	-9,869	2,803	1,162	-4,766	-7,585	1,692
순증1위	K T	K T	SKT	SKT	LGU+	K T	K T	SKT	LGU+
순증3위	SKT	SKT	LGU+	LGU+	K T	SKT	LGU+	LGU+	SKT

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5주	4월1주	4월2주	4월3주	4월4주	5월1주
SKT	-2,615	9,333	2,091	-2,690	779	-7,278	3,710	5,998	3,259
K T	-1,618	-6,454	-4,129	407	-2,153	3,013	-5,569	-3,465	-4,313
LGU+	4,233	-2,879	2,038	2,283	1,374	4,265	1,859	-2,533	1,054
순증1위	LGU+	SKT	SKT	LGU+	LGU+	LGU+	SKT	SKT	SKT
순증3위	SKT	K T	K T	SKT	K T	SKT	K T	K T	K T

주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총 합계
SKT	3,437	-8,792	-1,517	1,484	-13,198	-9,942	892	-31,088
K T	-4,203	-153	-2,544	1,125	10,298	3,914	-5,309	33,413
LGU+	766	8,945	4,061	-2,609	2,900	6,028	4,417	-2,325
순증1위	SKT	LGU+	LGU+	SKT	K T	LGU+	LGU+	K T
순증3위	K T	SKT	K T	LGU+	SKT	SKT	KT	SKT



SKT는 4월까지 월 상반기(1~2주)에는 순감을 보이다가 월 하반기에 이를 회복하는 양상이 반복되었으나, 5월부터는 반대 양상을 보였고,

< SKT의 월 상반기/하반기 번호이동 순증 비교 >

(단위 : 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 상반기	-38,065	-9,716	-4,094	-6,499	6,696	-11,714
월 하반기	25,768	7,453	8,734	9,708	-10,309	-9,050

KT는 1/2월에는 우위를 보인 반면(42,772건 순증), 3월 이후 대부분 週에서 순감을 기록(7,964건 순감)하였으며,

LGU+는 1/2월 대부분 週에서 순감을 보였으나(40,219건 순감), 3월 이후 대부분 순증을 기록(27,449건 순증)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1~3월)는 KT(4.4만건)→SKT(-1.0만건)→LGU+(-3.3만건) 순으로 KT, 2분기(4~6월)는 LGU+(3.4만건)→KT(-1.3만건)→SKT(-2.1만건) 순으로 LGU+의 실적이 두드러진다.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순증 추이(월별)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1분기	4월	5월	6월	2분기
SKT	-11,397	-2,237	2,638	-10,996	4,285	-1,804	-23,602	-21,121
K T	45,040	9,119	-9,726	44,433	-9,835	-9,834	6,139	-13,530
LGU+	-33,643	-6,882	7,088	-33,437	5,550	11,638	17,463	34,651

〈 ② 마케팅비 추이 〉

'11년 상반기 이통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 (18.7~20.0%)을 제외하고는 방통위가 연초 제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 21.4%(마케팅비는 ○○○○) → ○○○ 23.6%(○○○○○) → ○○○ 23.9%(○○○○○) 순이며, 유·무선간 조정금액(125억원/월)*을 반영하지 않으면 ○○○ 23.4% → ○○○ 23.6% → ○○○ 28.3% 순으로 나타났고,

※ Wibro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무선을 겸영하는 KT와 LGU+에 대해서는 '10년에는 1,000억원, '11년에는 1,500억원 범위 내에서 유·무선간 조정을 허용

마케팅비 지출 1위 횟수는 ○○○ 4회(1~4월), ○○○ 2회(5·6월)로 나타났다.

〈 '11년 상반기 이통 3사별 이동통신 마케팅비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S K T	매 출 액							
	마케팅비							
	마케팅비율							
	조정 비율							
K T	매 출 액							
	마케팅비							
	마케팅비율							
	조정 비율							
L G U +	매 출 액							
	마케팅비							
	마케팅비율							
	조정 비율							
계	매 출 액	19,163	18,190	19,513	19,165	19,961	19,540	115,532
	마케팅비	4,850	4,871	4,623	4,297	4,823	4,530	27,994
	마케팅비율	25.3%	26.8%	23.7%	22.4%	24.2%	23.2%	24.2%
	조정 비율	24.0%	25.4%	22.4%	21.1%	22.9%	21.9%	22.9%

〈 ③ '11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변화 〉

'11.6월 기준 SKT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대비 상승(50.63%→50.76%)한 반면, KT와 LGU+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KT 31.60%→31.49%, LGU+ 17.77%→17.75%)하였고,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최소 69.5만건(4월)·최대 94.1만건(5월)에 이르는 등 과열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전체 가입자수는 '10년말 대비 1.93% 성장하는데 그쳤다('10년말 50,768천명 → '11.6월말 51,750천명).

〈 '11년 상반기 이동전화 시장 가입점유율 변화 〉

(단위 : 천명)

구분	'10.12월말		'11.3월말		'11.6월말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SKT	25,705	50.63%	25,989	50.60%	26,269	50.76%
K T	16,041	31.60%	16,299	31.73%	16,296	31.49%
LGU+	9,022	17.77%	9,077	17.67%	9,185	17.75%
합계	50,768	100.00%	51,365	100.00%	51,750	100.00%

라. 사전점검 결과(시장 모니터링 지표)

4월3주(4.17~23일)부터 6월2주(6.5~11일)까지 8주간의 시장 모니터링 지표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6.21일 이통 3사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 시장 모니터링 지표 세부내용 〉

① 개요

- 주 단위로 시장과열 판단(1단계) → 과열 시기에 사업자별로 벌점 부과(2단계) → 과열 지속기간 및 누적 벌점에 따라 경고, 제재 등 단계적 조치(3단계)

② 1단계 : 과열 판단

- (원칙 : 번호이동 규모) 해당週의 일평균 번호이동이 2.2만건을 초과하면 “과열”로 판단
- 2.2만건은 최근 3년('08~'10년) 일평균 번호이동(22,812건)을 참조

- (예외① : 하락 추세) 2주 연속 일평균 번호이동이 하락하고, 2.5만건 이하면 “안정”으로 판단
 - 사업자의 시장안정 노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10년 일평균 번호이동 실적(24,651건)을 고려
- (예외② : 단말기·서비스 신규 출시) 높은 번호이동 실적이 새로운 단말기나 서비스 출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정”으로 판단
 - 혁신적인 서비스 및 이와 연계된 단말기 경쟁은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다만, 사업자의 편법적 마케팅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소명을 제출받고, 최대 3주(출시週 포함)만 예외 인정

③ 2단계 : 별점 부과

- “과열”시 週단위로 최대 100점의 별점을 부과
 - 주요 지표인 ①보조금 모니터링에 40점, ②표본조사에 20점을 각각 배분하고,
 - 보조 지표인 ③번호이동 순증에 10점, ④마케팅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에 10점, ⑤인당 확보비에 5점, ⑥판매점 단가표에 5점, ⑦불·편법 영업 자율 규제 실적에 10점을 배분하여 별점을 조정

④ 3단계 : 단계적 조치

- (원칙) 과열이 지속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치를 시행
 - 과열이 2주 지속되면 마케팅 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경고하고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 과열이 3주 지속되면 그 정도에 따라 ①이통 3사의 본사·유통망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 ②최초 과열시점(1주)부터 3주차까지 누적 별점으로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여 선별 조사에 착수하고,
 - 조사중 누적 별점, 조사 전후의 각종 보조지표(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인당 확보비 등)를 제재시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로 고려

- (예외) 누적 별점은 높지만 동 기간 번호이동 순증 등을 볼 때 주도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를 유보하거나 대상을 변경
- 아울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표본조사나 실태점검을 방해하는 사업자는 누적 별점과 무관하게 즉시 조사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최소 2.2만건(4월3주)·최대 3.2만건(5월1주)로 8주 모두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2만건을 초과하나,

5월1주와 2주(5.1~14일)는 새로운 단말기 출시(SKT·KT 4.29일/LGU+ 5.1일 갤럭시 S2 출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므로 6주(4월3·4주, 5월3주~6월2주)가 과열에 해당하고,

5월3주부터 6월2주까지 4주 연속 과열이 지속되었으므로 지표상 사실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다.

〈 4월3주 ~ 6월2주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단위 : 건)

구분	4월3주	4월4주	5월1주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평균
전체	22,791	25,570	32,237	30,832	27,604	30,495	31,110	27,696	28,542
SKT	9,481	10,816	13,215	12,774	10,303	12,183	12,755	10,036	11,445
KT	7,585	9,010	11,453	10,980	10,062	10,981	11,611	11,079	10,345
LGU+	5,724	5,744	7,569	7,078	7,239	7,332	6,743	6,581	6,751

이때 과열에 해당하는 4월3·4주 및 5월3주~6월2주 누적 별점은 ○○○ (283점) → ○○○ (260점) → ○○○ (237점) 순으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KT의 과열기간(4월3·4주 및 5월3주~6월2주) 별점 〉

구분	4월3주	4월4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보조금 모니터링	○○점	○○점	○○점	○○점	○○점	○○점
번호이동 순증	○점	○점	○점	○점	○점	○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점	○점	○점	○점	○점	○점
표본조사	○○점	○○점	○○점	-	-	-
합계	○○점	○○점	○○점	○○점	○○점	○○점

다만, 위 기간 3사 모두 보조금 모니터링이나 표본조사에서 파악된 평균 보조금이 27만원을 항상 초과하는 등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3사 모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마.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6,296천명으로 전체 시장의 31.49%,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매출액은 70,301억원으로 30.75%를 점유하고 있다('10.12월말 기준).

〈 이동전화 시장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SKT	KT	LGU+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6,269 (50.76)	16,296 (31.49)	9,185 (17.75)	51,750 (100.0)
매 출 액 (점유율, %)	123,260 (53.91)	70,301 (30.75)	35,064 (15.36)	228,625 (100.0)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 제출자료(2010년 영업보고서)

2. 사실조사 결과

가. 현장조사 개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6.21일부터 7.31일까지 피심인의 본사·전국 주요권역의 지점 및 대리점 등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11년 상반기(이하 "조사대상 기간") 가입건(기기변경 포함.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영업정책·보조금 수준 및 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전산자료·이메일 및 내부 문건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 차별적 보조금 책정

< ① 영업정책 배포 (이통사 → 대리점) >

피심인은 '11년 상반기 단말기·연령대·판매수량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된 각종 영업정책을 일선 유통망에 배포하였다.

영업정책은 매월 1일 유통망에 서면으로 배포되나, 세부 정책 및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수차례 변동되고, 이메일·SMS 및 개통전산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망에 전파되었다.

< 영업정책 예시 >

공통 2 : 모델 정책(B)

6월 마케팅정책

對外秘

B-A1. Anycall 판매활성화 정책 1							Start 6.1~		
적용 기간	가입 유형			약정/할부 기간			운영 대상		
	기본형 결합형	골드형 I형	스마트 스폰서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010 신규	MNP 신규	기변
6.1 ~	●	●	●	●	●	●	●	●	●
대상 모델							견당 지급		
SPH-W8200							350,000		
SPH-W8500							150,000		
SPH-W9500							140,000		
SPH-W8300, SHW-A130K							120,000		
SHW-A200K, M200K							100,000		
SPH-A220K							80,000		
SHW-M290K							45,000		
SHW-M130K							40,000		
SPH-W9300							30,000		
SHW-M250K							10,000		

B-A2. Anycall 판매활성화 정책 2							Start 6.1~		
적용 기간	가입 유형			약정/할부 기간			운영 대상		
	기본형 결합형	골드형 I형	스마트 스폰서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010 신규	MNP 신규	기변
6.1 ~	●	●	●	●	●	●	●	●	●
대상 모델							견당 지급		
SHW-A200K, SPH-W8200							60,000		
SPH-W9300							40,000		
SHW-A280K, SPH-W7700, W8500							30,000		
SHW-A110K, A130K, A170K, A220K, A250K, SPH-W5000, W5200, W5300, W5310, W7100, W8300, W8400, W9000, W9500							20,000		

< ② 단가표 작성 및 배포 (대리점 → 판매점) >

피심인의 영업정책을 바탕으로 대리점은 먼저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윤을 고려하여 단말기별로 적정 판매단가를 산정하였고,

이후 대리점은 단말기별 적정 판매가와 마진이 기재된 “단가표”를 작성하여 판매점에 배포하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초로 고객과 개별 흥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 대리점 단가표 예시 >

0602~												
KT 의무약정				외주약정 신규(24개월기준)		연평균 원금	보상가면 (연납) (24개월기준) 원금가	일반가면 (기납) (24개월기준) 원금가	안정 보조금	안정 보조금2	보조금 합계	
제조사	모델명	비내임	출고가	010신규	MNP							
LG	LG-KU9300	후카폰	539,000	0	0	0	100,000	130,000	80,000	60,000	140,000	
LG	LG-KH3900	조이킵(FMC)	451,000	0	0	0	80,000	110,000	80,000	60,000	140,000	
LG	LG-KU4000	후슬폰	396,000	10,000	10,000	0	100,000	130,000	80,000	60,000	140,000	
LG	LG-KU3500	버블킵(FMC)	299,500	70,000	70,000	0	150,000	180,000	80,000	60,000	140,000	
LG	LG-KU3700 ★★	올리머스킵	394,000	0	0	0	10,000	40,000	80,000	60,000	140,000	
LG	LG-KU3900	올리머스킵	336,000	450,000	450,000	456,000	500,000	53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PH-V9000	코비폰	643,500	50,000	50,000	160,000	100,000	13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PH-V9300 ★★	코비F	374,000	0	0	0	70,000	10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M130K	갤럭시K	799,700	450,000	450,000	579,000	450,000	48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M200K	넥서스S	814,000	500,000	500,000	435,000	500,000	53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M250K	갤럭시S2	847,000	800,000	800,000	757,000	800,000	83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M290K	갤럭시지오	550,000	0	0	0	30,000	6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A130K	와이파이폰(FMC)	455,400	0	0	0	50,000	8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A290K	노리F2	363,000	20,000	20,000	0	100,000	13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A250K	미니얼블터지	330,000	70,000	70,000	0	120,000	15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A220K ★★	노리폰(FMC)	399,300	0	0	0	60,000	9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A200K	노리F	399,500	150,000	150,000	200,000	240,000	270,000	80,000	60,000	140,000	
삼성	SHW-A170K ★★	코비N(FMC)	394,000	0	0	180,000	150,000	180,000	80,000	60,000	140,000	
한화	IM-A630K ★★	이자코폰	605,000	0	0	0	0	30,000	80,000	-	80,000	
한화	IM-U660K	울프루키(FMC)	539,000	0	0	0	100,000	130,000	80,000	60,000	140,000	
한화	IM-S610K	캐크제이크	473,000	0	0	0	70,000	100,000	80,000	60,000	140,000	
한화	IM-A710K	베가K	835,500	420,000	420,000	444,000	430,000	460,000	80,000	60,000	140,000	
한화	IM-A750K ★★	미라크A	642,400	0	0	142,000	20,000	50,000	80,000	60,000	140,000	
KT tech	EV-S100	테이크	759,000	240,000	240,000	414,000	240,000	270,000	80,000	60,000	140,000	
KT tech	KM-S120	테이크2	605,000	180,000	180,000	525,000	180,000	210,000	80,000	60,000	140,000	
코오롱	MB-S61	마루킵스	314,000	670,000	670,000	635,000	670,000	700,000	80,000	60,000	140,000	
HTC	HTC-A6363	레전드폰	506,000	150,000	150,000	0	200,000	230,000	80,000	60,000	140,000	
HTC	HTC-A9191	디자이너HD	759,000	670,000	670,000	734,000	700,000	730,000	80,000	60,000	140,000	
■ 약정 공지사항												
- FMC모델의 경우 Voip 필수유치(FMC모델 : 모델명+인원 표시함) → 130K170K220K3900.KU3800.660K - A630K(이자코) : 010신규/연료이유 시 후원(1년 약정)=가입비면제 / 기본 연금가 공표 - 신 모델 스마트폰 2종(미라크A, 갤럭시지오) 신규 연금가 '공표'												

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이통사대리점·판매점 → 이용자)

〈 ① 조사대상 건수 〉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번호이동/일반 신규 가입자 50,388건(번호이동 신규 27,774건, 일반 신규 22,614건), 기기변경 26,018건 등 총 76,406건을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신규	8,870	9,776	6,982	7,093	6,768	10,899	50,388
번호이동	5,138	5,046	3,469	3,816	3,894	6,411	27,774
일반	3,732	4,730	3,513	3,277	2,874	4,488	22,614
기기변경	1,411	3,922	3,555	4,842	5,127	7,161	26,018
총합계	10,281	13,698	10,537	11,935	11,895	18,060	76,406

이때, 단말기 구매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자나 선불요금제 가입건, 일반 단말기가 아닌 태블릿 PC나 무선인터넷 모뎀 개통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② 시기별 보조금 수준 〉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건당 지급된 보조금 평균액은 31.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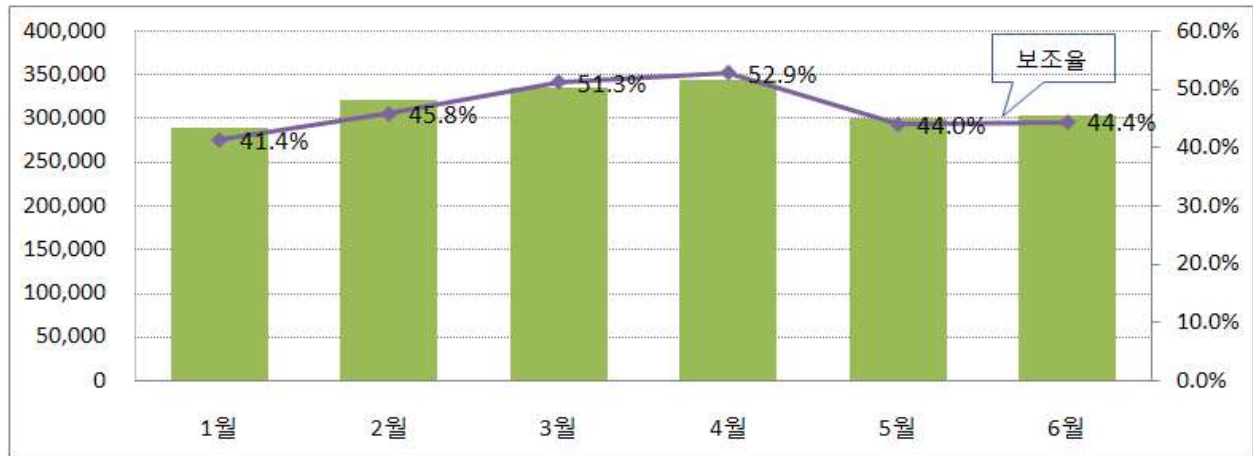
동 기간 판매된 단말기는 97종으로 평균 출고가는 67.6만원,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46.4%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28.8만원(보조율 41.4%) → 4월 34.2만원(52.9%)로 줄곧 상승하다가 5·6월 29.8만원(44.0%)·30.1만원(44.4%)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고,

〈 보조금·보조율 변동 추이(월별) 〉

(단위 :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출고가	697,355	697,781	653,765	648,465	677,546	679,476	676,473
보조금	288,479	319,797	335,316	342,945	298,248	301,880	313,749
보조율	41.4%	45.8%	51.3%	52.9%	44.0%	44.4%	46.4%



주별로 살펴보면 4월2주(10~16일)가 36만원(55.6%)로 가장 높은 보조금 및 보조율을 보인 반면, 1월2주(9~15일)는 26만원(36.2%)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 보조금/보조율 변동 추이(주별) 〉

(단위 : 원)

구분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5주
출고가	691,150	718,489	675,352	708,289	697,744	710,079	700,461	682,529	683,384	685,828	642,071	625,651	637,609
보조금	293,682	260,346	310,785	284,063	322,346	304,125	321,063	327,806	332,358	342,781	325,666	339,102	337,294
보조율	42.5%	36.2%	46.0%	40.1%	46.2%	42.8%	45.8%	48.0%	48.6%	50.0%	50.7%	54.2%	52.9%

구분	4월1주	4월2주	4월3주	4월4주	5월1주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6월5주
출고가	657,115	647,576	632,368	651,498	680,480	666,054	677,974	683,230	690,812	686,014	685,954	685,224	642,270
보조금	348,477	360,182	350,329	323,869	267,477	282,524	307,573	322,642	310,951	318,189	296,301	285,864	307,722
보조율	53.0%	55.6%	55.4%	49.7%	39.3%	42.4%	45.4%	47.2%	45.0%	46.4%	43.2%	41.7%	47.9%



〈 ③ 가입형태별 보조금 수준 〉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에 대한 평균 보조금은 30.7만원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32.6만원으로 시장 관행과 달리 평균적으로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1.9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간 중 2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최소 1.4만원, 최대 11.2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평균 보조금 변동 추이(월별) 〉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신규 가입자	273,051	327,126	336,615	336,406	292,107	288,520	307,174
기기변경 가입자	385,468	301,528	332,765	352,524	306,355	322,214	326,483
보조금 차이	-112,417	25,598	3,850	-16,119	-14,248	-33,694	-19,309



그러나, 기기변경 가입자 중 전환신규*를 제외하면 신규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환신규 : 2G 단말기를 이용하던 가입자가 동일 사업자의 3G 단말기로 기기를 변경 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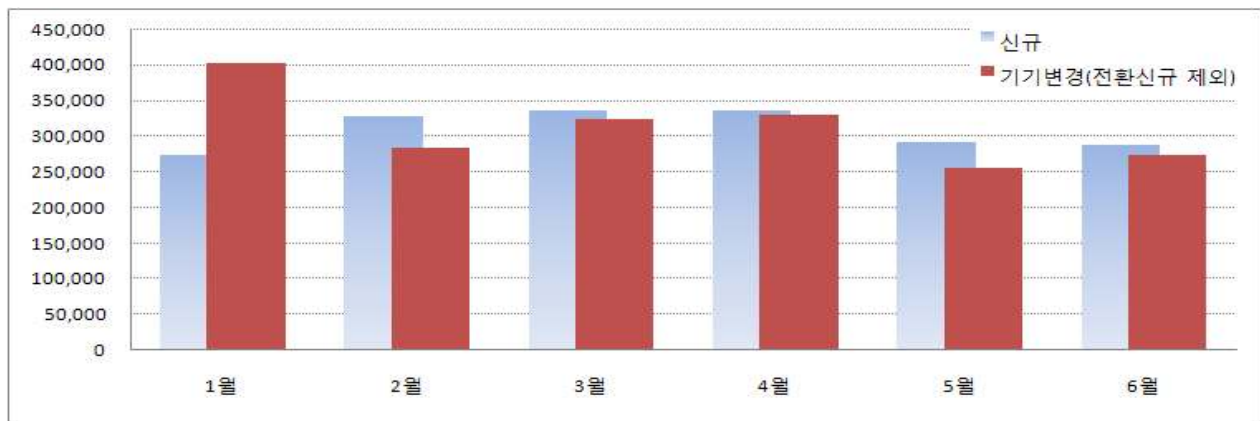
조사대상 기기변경건 중 일반 기기변경(1.8만건)의 보조금(보조율)은 29.6만원(42.8%), 전환신규(0.7만건)는 40.5만원(83.6%)으로 전환신규에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전환신규를 제외할 경우 1월을 제외하고는 최소 0.6만원에서 최대 4.4만원 까지 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및 기기변경(전환신규 제외) 평균 보조금 변동 추이(월별) 〉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신규 가입자	273,051	327,126	336,615	336,406	292,107	288,520	307,174
기기변경 가입자 (전환신규 제외)	401,975	282,257	323,645	330,239	255,077	274,143	296,863
보조금 차이	-128,924	44,869	12,970	6,166	37,030	14,377	1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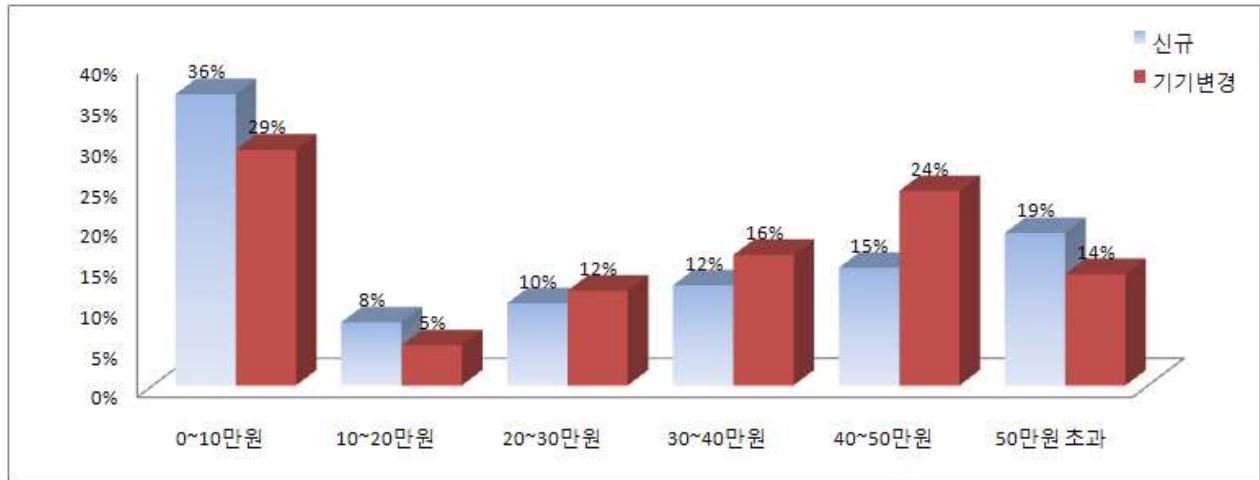
즉, 피심인이 2G 사업폐지를 위해 기존 2G 가입자의 3G 전환을 유도 하면서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이 높아졌고, 이러한 변수를 제외 한다면 시장관행과 마찬가지로 신규 가입자에게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조금 수준별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신규와 기기변경이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신규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보조금 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가입자 (점유율)	18,185 (36.1%)	3,943 (7.8%)	5,128 (10.2%)	6,256 (12.4%)	7,352 (14.6%)	9,524 (18.9%)
기기변경 가입자 (점유율)	7,601 (29.2%)	1,294 (5.0%)	3,053 (11.7%)	4,209 (16.2%)	6,271 (24.1%)	3,590 (13.8%)



〈 ④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보조금 수준 〉

피심인의 단말기 판매방식은 약정 보조금 지급시기 및 정도에 따라,

① 단말기 판매시점에 약정 보조금을 일시불 지급하는 “쇼킹 기본형”, ② 매월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쇼킹 골드형”, ③ 약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i요금제 등 가입자에 대해 요금을 추가 할인해 주는 “스마트스폰서”로 구분된다.

조사대상 기간 중 판매비중은 스마트스폰서가 45,376건으로 59.4%, 쇼킹 기본형이 30,283건으로 39.6%를 차지하는 등 양자의 비중이 99%를 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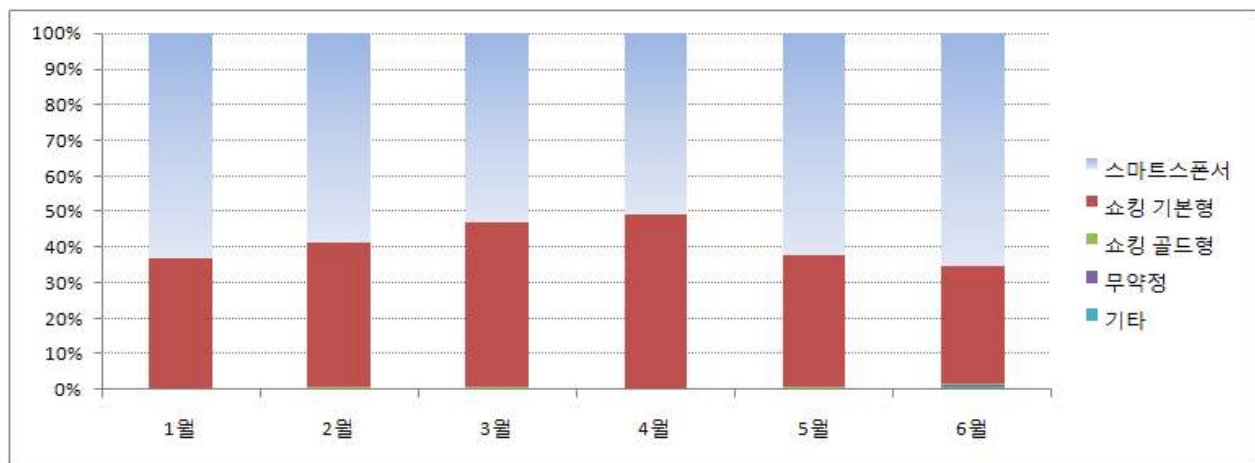
1~4월은 스마트스폰서 비중이 감소하고 쇼킹 기본형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1월 63.1%對36.3% → 4월 51%對48.5%)을 보였으나,

5월 들어 갤럭시 S2 출시 이후 스마트폰과 연계된 스마트스폰서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5월 62.3%對36.7% → 6월 65.3%對32.9%)을 보였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판매 비중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체
스마트스폰서	6,486 (63.1%)	8,018 (58.5%)	5,574 (52.9%)	6,089 (51.0%)	7,407 (62.3%)	11,802 (65.3%)	45,376 (59.4%)
쇼킹기본형	3,730 (36.3%)	5,581 (40.7%)	4,880 (46.3%)	5,791 (48.5%)	4,368 (36.7%)	5,933 (32.9%)	30,283 (39.6%)
쇼킹골드형	24 (0.2%)	23 (0.2%)	20 (0.2%)	20 (0.2%)	10 (0.1%)	10 (0.1%)	107 (0.1%)
무약정	3 (0.0%)	2 (0.0%)	2 (0.0%)	3 (0.0%)	71 (0.6%)	173 (1.0%)	254 (0.3%)
기타	38 (0.4%)	74 (0.5%)	61 (0.6%)	32 (0.3%)	39 (0.3%)	142 (0.8%)	386 (0.5%)



보조금 수준은 쇼킹 기본형(48만원) → 스마트스폰서(23.6만원) 순인 반면, 평균 출고가는 쇼킹 기본형이 49만원으로 스마트스폰서(80만원)보다 38.8% 낮게 나타났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평균 출고가 및 보조금 〉

(단위 : 원)

구분	쇼킹기본형	스마트스폰서	쇼킹골드형	무약정	기타	총 합계
출고가	490,204	800,561	560,373	515,675	840,764	676,473
보조금	480,995	201,641	262,018	481,509	275,493	313,749
보조율	98.1%	25.2%	46.8%	93.4%	32.8%	46.4%

아울러, 쇼킹 기본형은 전체 판매건수 중 스마트폰 비중이 8.1%에 불과하나, 스마트스폰서는 93.9%에 달하였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스마트폰 판매 비중 〉

(단위 : 건)

구분	쇼킹기본형	스마트스폰서	쇼킹골드형	무약정	기타	합계
전체 판매대수	30,283	45,376	107	254	386	76,406
스마트폰 판매대수	2,438	42,591	12	21	380	45,442
스마트폰 비중	8.1%	93.9%	11.2%	8.3%	98.4%	59.5%

즉, 쇼킹 기본형은 중·저가 일반 휴대전화 판매 시 약정의 보조금과 결합하여 소위 “공짜폰” 판매에 활용되는 반면,

스마트스폰서는 고가 스마트폰에 주로 적용되고, 요금할인이 일정 부분 보조금을 대체하는 관계로 보조금 수준은 쇼킹 기본형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5·6월은 번호이동 가입자수나 마케팅비가 증가하는 등 시장 과열이 심화되었으나, 갤럭시 S2 출시 이후 주로 스마트폰과 연계된 스마트스폰서 비중이 증가하면서 평균 보조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 ⑤ 단말기 유형에 따른 보조금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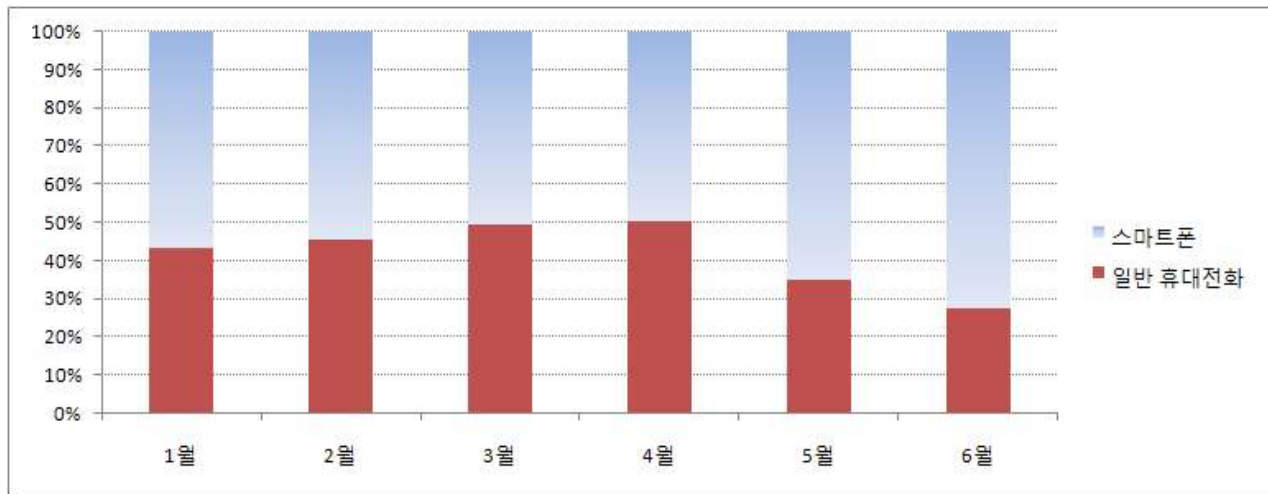
조사대상 기간 중 4월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전화보다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갤럭시 S2가 출시된 5월은 65.1%로 4월의 49.7%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전화 판매 비중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체
스마트폰	5,857 (57.0%)	7,487 (54.7%)	5,322 (50.5%)	5,937 (49.7%)	7,741 (65.1%)	13,098 (72.5%)	45,442 (59.5%)
일반 휴대전화	4,424 (43.0%)	6,211 (45.3%)	5,215 (49.5%)	5,998 (50.3%)	4,154 (34.9%)	4,962 (27.5%)	30,964 (40.5%)
전체	10,281	13,698	10,537	11,935	11,895	18,060	76,40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요금할인 위주의 스마트스폰서 방식으로 판매되므로 평균 보조금과 보조율(22만원, 27.4%)이 전체 평균(31.3만원, 46.4%)에 미치지 못하고,

일반 휴대전화는 단말기 자체 할인에 집중하는 쇼킹 기본형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평균 보조금과 보조율(45.1만원, 92.1%)이 스마트폰보다 높게 나타났다.

〈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전화 보조금 및 보조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출고가	보조금	보조율
스마트폰	45,442	803,571	220,107	27.4%
일반 휴대전화	30,964	489,947	451,176	92.1%
전체	76,406	676,473	313,749	46.4%

〈 ⑥ 보조금 차별의 정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기변경보다는 신규 가입자, 스마트스폰서보다는 쇼킹 기본형 단말기 구매자, 스마트폰보다는 일반 휴대전화 구매자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바,

같은 가입형태·같은 지급방식으로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 차별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쇼킹 기본형과 스마트폰서 각각의 판매량 상위 5개 단말기의 보조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쇼킹 기본형으로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신규 가입자간에도 최대 55.7만원, 기기변경 가입자간에는 최대 53.9만원까지 보조금 차이가 발생하였고(EV-W700(부비부비폰), 출고가 55만~63.8만원),

〈 쇼킹 기본형 판매량 상위 5개 단말기 보조금 차이 〉

(단위 : 원)

모델	출고가	가입유형	보 조 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차이
LG-KU4000 (주름폰)	396,000 ~449,900	신규	395,549	99.5%	474,700	80,000	394,700
		기기변경	392,896	99.1%	450,700	80,000	370,700
LG-KU3800 (버블팝)	269,500	신규	263,728	97.9%	303,100	80,500	222,600
		기기변경	262,999	97.6%	303,100	99,500	203,600
EV-W700 (부비부비폰)	550,000 ~638,000	신규	557,976	100.0%	637,800	80,000	557,800
		기기변경	525,157	94.7%	629,800	90,000	539,800
SHW-A130K (WiFi 폴더)	455,400	신규	451,542	99.2%	489,000	49,400	439,600
		기기변경	443,608	97.4%	489,000	198,400	290,600
LG-KH3400 (스위트폰)	449,900 ~528,000	신규	477,464	106.1%	483,500	49,900	433,600
		기기변경	450,004	100.0%	480,200	349,900	130,300

스마트폰서 방식으로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신규 가입자간에도 최대 97만원, 기기변경 가입자간에는 최대 94.6만원까지 보조금 차이가 발생하였다(AIP4-32(아이폰4 32G), 출고가 94.6만원).

〈 스마트폰서 판매량 상위 5개 단말기 보조금 차이 〉

(단위 : 원)

모델	출고가	가입유형	보 조 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차이
AIP4-16 (아이폰4 16G)	814,000	신규	131,590	16.2%	844,300	0	844,300
		기기변경	146,525	18.0%	814,000	0	814,000
SHW-M250K (갤럭시S2)	847,000	신규	152,885	18.1%	924,600	0	924,600
		기기변경	173,425	20.5%	847,000	7,000	840,000
IM-A710K (베가X)	885,500 ~929,500	신규	298,331	32.9%	854,100	62,500	791,600
		기기변경	306,419	33.8%	885,500	93,500	792,000
SHW-M130K (갤럭시K)	799,700 ~899,800	신규	222,196	26.6%	697,300	0	697,300
		기기변경	238,167	28.7%	587,300	10,700	576,600
AIP4-32 (아이폰4 32G)	946,000	신규	120,944	12.8%	970,000	0	970,000
		기기변경	132,814	14.0%	946,000	0	946,000

3. 위법성 판단

가.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 V. 5호 가목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3] V.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위법성 판단기준

〈 ① 개 요 〉

피심인은 구매시기·가입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고, 차별로 인하여 혜택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 집단 내에서도 최소 0원~최대 97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되고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차별 행위가 이용자의 편익과 이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이용자간 차별의 정도가 비용 또는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 ② 구체적 판단기준 〉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³⁾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3) ’09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1개월, KT는 20개월, LGU+는 19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다. 위법성 판단

< ① 27만원 초과건수 등 >

위 기준에 의할 때 피심인의 조사대상 보조금 지급건 76,406건 중 27만원을 초과하여 부당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수준에 해당하는 건수는 39,541건(51.8%)이다.

한편, 조사대상 건 중 개통일 기준으로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96개 기종 중 LG-KU4000, SPH-W9300 등 42개 기종(판매건수는 10,945건)이다.

< ② 유형별 위반 정도 >

위반 정도를 기간, 가입형태(신규/기기변경 등), 약정보조금 지급방식(쇼킹 기본형/스마트스폰서 등), 단말기 유형(스마트폰/일반폰) 별로 분석하였다.

월별로는 4월 위반률이 33.2%로 제일 낮은 반면, 6월 위반률이 42.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 월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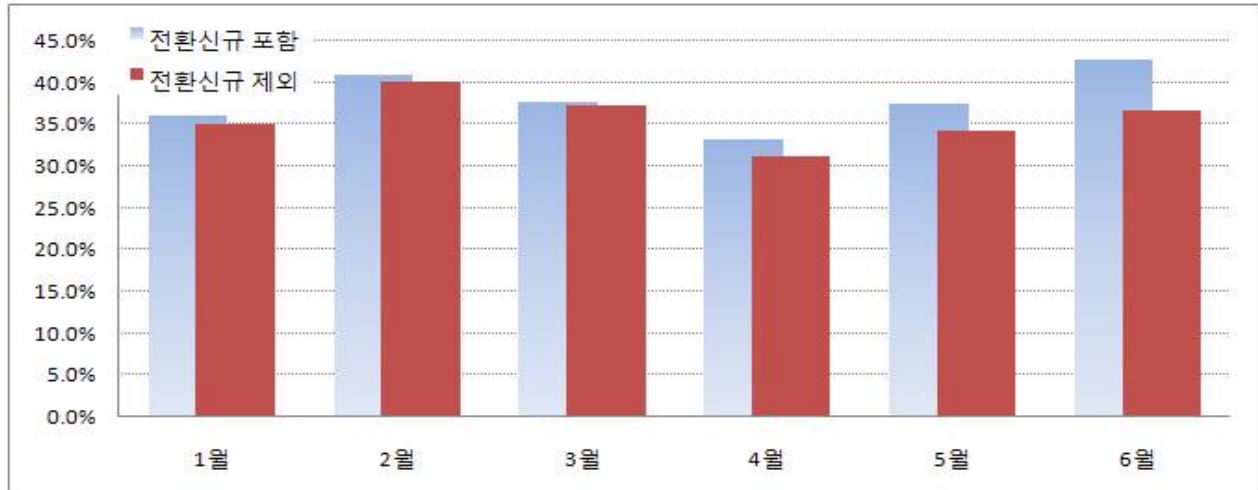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건수(위반율)
1월	10,281	1,033 (10.0%)	697,355	288,479	4,675 (45.5%)	3,714 (36.1%)
2월	13,698	1,363 (10.0%)	697,781	319,797	6,709 (49.0%)	5,589 (40.8%)
3월	10,537	1,960 (18.6%)	653,765	335,316	5,711 (54.2%)	3,967 (37.6%)
4월	11,935	3,053 (25.6%)	648,465	342,945	6,914 (57.9%)	3,962 (33.2%)
5월	11,895	1,694 (14.2%)	677,546	298,248	6,064 (51.0%)	4,454 (37.4%)
6월	18,060	1,842 (10.2%)	679,476	301,880	9,468 (52.4%)	7,706 (42.7%)
합계	76,406	10,945 (14.3%)	676,473	313,749	39,541 (51.8%)	29,392 (38.5%)

다만, 전환신규를 제외할 경우 피심인이 2G 사업폐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환신규 보조금 수준을 높인 4월 이후 위반율이 2.1%에서 6%까지 감소하였다.

〈 전환신규 포함/제외시 위반율 차이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평균
전환신규 포함 (위반율)	3,714 (36.1%)	5,589 (40.8%)	3,967 (37.6%)	3,962 (33.2%)	4,454 (37.4%)	7,706 (42.7%)	29,392 (38.5%)
전환신규 제외 (위반율)	3,393 (35.1%)	5,284 (40.2%)	3,761 (37.3%)	3,386 (31.1%)	3,446 (34.2%)	5,677 (36.7%)	24,947 (36.0%)



가입형태별로는 신규가 38.3%(번호이동 신규는 33.4%, 일반신규는 44.2%), 기기변경은 38.9%로 기기변경의 위반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나,

〈 가입형태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건수(위반율)
신규	50,388	5,905 (11.7%)	696,699	307,174	24,607 (48.8%)	19,282 (38.3%)
일반신규	50,388	3,872 (17.1%)	696,699	307,174	13,472 (59.6%)	10,001 (44.2%)
번호이동	27,774	2,033 (7.3%)	736,063	267,703	11,135 (40.1%)	9,281 (33.4%)
기기변경	26,018	5,040 (19.4%)	637,302	326,483	14,934 (57.4%)	10,110 (38.9%)
합계	76,406	10,945 (14.3%)	676,473	313,749	39,541 (51.8%)	29,392 (38.5%)

전환신규를 제외할 경우 기기변경 가입자의 위반율은 38.9%에서 29.9%까지 대폭 감소하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는 2G 사업폐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전환신규 포함/제외시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건수(위반율)
전환신규 포함	26,018	5,040 (19.4%)	637,302	326,483	14,934 (57.4%)	10,110 (38.9%)
전환신규 제외	18,953	3,124 (16.5%)	693,888	296,863	8,608 (45.4%)	5,665 (29.9%)

지급방식별로는 쇼킹 기본형이 30,283건 중 18,506건(61.6%)로 높은 위반율을 보인 반면, 스마트스폰서는 45,376건 중 10,472건(23.1%)로 쇼킹 기본형 대비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아울러, 쇼킹 기본형 판매건 중 28,463건(94%)가 27만원을 초과하나, 재고 단말기의 비중이 매우 높아 최종 위반율은 61.1%로 나타났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위반율)
스마트스폰서	45,376	439 (1.0%)	800,561	201,641	10,590 (23.3%)	10,472 (23.1%)
쇼킹기본형	30,283	10,423 (34.4%)	490,204	480,995	28,463 (94.0%)	18,506 (61.1%)
쇼킹골드형	107	11 (10.3%)	560,373	262,018	50 (46.7%)	46 (43.0%)
무약정	254	68 (26.8%)	515,675	481,509	241 (94.9%)	173 (68.1%)
기타	386	4 (1.0%)	840,764	275,493	197 (51.0%)	195 (50.5%)

단말기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위반율은 26%인 반면, 일반 휴대전화는 56.7%로 일반 휴대전화가 더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 단말기 유형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위반율)
스마트 폰	45,442	465 (1.0%)	803,571	220,107	12,275 (27.0%)	11,825 (26.0%)
일반 휴대폰	30,964	10,480 (33.8%)	489,947	451,176	27,266 (88.1%)	17,567 (56.7%)
합계/평균	76,406	10,945 (14.3%)	676,473	313,749	39,541 (51.8%)	29,392 (38.5%)

판매량 상위 10개 단말기 중 대표적 스마트폰인 아이폰4(16G), 갤럭시 S2의 위반율은 각각 3.1%, 14.4%에 그쳤으나, 일반폰인 LG-KH3400(스위트 폰)은 평균 보조금이 출고가에 근접하고 위반율도 96.5%에 달하였다.

〈 기종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순번	구분	개수	출고가	보조금	위반건수	위반율
1	AIP4-16 (아이폰4 16G)	9,836	814,000	137,802	304	3.1%
2	SHW-M250K (갤럭시S2)	6,675	847,000	167,421	961	14.4%
3	IM-A710K (베가X)	4,791	885,500 ~929,500	300,745	2,202	46.0%
4	SHW-M130K (갤럭시K)	3,834	799,700 ~899,800	228,470	1,381	36.0%
5	LG-KU4000 (주름폰)	2,370	396,000 ~449,900	385,650	63	2.7%
6	LG-KH3400 (스마트폰)	2,305	449,900 ~528,000	451,635	2,224	96.5%
7	AIP4-32 (아이폰4 32G)	2,208	946,000	128,340	43	1.9%
8	AIP4-W16 (아이폰4 화이트)	2,120	814,000	144,697	84	4.0%
9	SHW-M200K (넥서스S)	2,023	814,000	278,103	840	41.5%
10	SPH-W9300 (코비F)	1,962	374,000 ~528,000	327,579	579	29.5%

◆ 예외 사유(재고 단말기 소진 목적의 보조금)까지 고려한 피심인의 최종 위반건수는 전체 조사건수 76,406건 중 29,392건(38.5%)

라.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 V. 5호 가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의견

피심인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시장 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전환신규 가입자에 보상차원으로 지급된 보조금(4,445건)의 경우 위반건수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

'10년 9월 의결은 “타 이용자에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수준(27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되, 재고단말기 소진 목적의 보조금 등 일반적 상관행은 예외로 인정하였는데,

2G→3G 전환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역시 과도하면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어 본 건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마케팅 목적(기존 가입자 방어)외에 보상적 성격(2G 서비스 이용불가에 따른 손해배상)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

할인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ii)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제출하고, (iv)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검증하고, 허위 입력시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v)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비·할부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및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한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과징금 부과 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I. 2호),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709억8천만원이다.

〈 ② 기준 과징금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10.9월 의결건 대비 위반율이 49%에서 38.5%로 다소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하되,

〈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 범위 〉

(단위 : 억원)

사업자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중대성 약함 (부과기준율 0.5% 이내)	중대 (부과기준율 0.5~1%)	매우 중대 (부과기준율 1~2.5%)
K T	14,363	71.8 이내	71.8 ~ 143.6	143.6 ~ 359.0

부과 기준율은 재발한 점을 고려하여 '10.9월 의결건의 0.25%(중대성 약함 상한액의 50%)에서 0.3%(상한액의 60%)로 높여 부과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43억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기준 과징금에 대해 영업 행태, 조사협조 여부 및 시정명령

이행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피심인의 과징금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응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되,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전부 공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입신청 시 이용약관서에 단말기의 출고가 및 판매가를 기재하도록 하는 작년 9월 시정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 및 전환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보상적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 기준 과징금에서 15%를 감경(5% 가중 및 20% 감경)한 36억6천만원으로 결정한다.

7.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1. 9. 19.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홍 성 규 (인)
	위 원	김 충 식 (인)
	위 원	신 용 섭 (인)
	위 원	양 문 석 (인)